

서울고등법원

제 5 형 사 부

결 정

사 건 86토24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

피 고 인 권 인 숙 ()



항 고 인 피고인의 변호인들

변 호 인 변호사 고영구, 김상철, 박원순, 이돈명, 이상수, 조영택,
조준희, 홍성우, 황인철.

원 결 정 인천지방법원 1986. 10. 23. 자 86초662결정

주 문 항고를 기각한다.

이 유 이 사건 항고이유의 요지는, 피고인에 대한 인천지방법
원 86고합375 공문서변조등 피고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
법관들(재판장 판사 윤규한, 판사 홍기종, 판사 김학모)은 변호인들
이 신청한 문귀동에 대한 검찰수사기록 검증신청과 문기동, 이흥기,

김해성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 바, 위 증거들은
본안 피고사건의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증거들인데다가
이를 채택, 심리함에 있어 시간적, 기술적 제약등 아무런 어려움
없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도 없이 위 증거신청을 받아들이지
아니한 것은 그 자체위법한 것일 뿐 아니라 이는 이른바 성고문사
건의 진상을 은폐하려는 행정당국의 노력에 협력하기 위한 것이라고
밖에는 설명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재판부 법관들은 행정권력의
영향하에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음
에도 불구하고, 항고인의 이 사건 기피신청을 기각한 원결정은 위법
하다는 취지이다.

살피건대, 원결정 기록과 본안 피고사건 기록을 대조 검토하여 보
면, 피고인이 피고사건의 제1차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
고, 검사가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수사기록을 증거
로 함에 동의하였으며, 공판정에서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함과 아울러

그간의 수사과정에 관하여 기술한 탄원서 형식의 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공판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등의 공판진행상황에 있어서 변호인이 다시 정상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 위 증거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이 재판을 일탈한 위법, 부당한 결정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밖에도 위 재판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한 원심결정 이유는 그대로 시인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.

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을 기각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.

1986. 11. 7.

등 본 이 다

1986. 11. 7

서울고등법원
법원사무관

판 사 이
장 의
법원사무관



한 대 현
홍 른
임 손 명